

5. 일본사회와 일본교회의 각성을 위해서

일본사회, 재일의 사회를 포함, 세대교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재일의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으로부터 고작 50년이 지났을 뿐이므로 그 역사를 사람들의 의식으로부터 지울 수는 결코 없는 일입니다. 재일의 1세와 동시대를 살아온 일본인은 각기의 생을 검증하고 그것을 2세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종, 민족을 묻지않고 인류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그와 같이 계승되어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세는 1세로부터 받은 것에 스스로의 경험을 보태어 3세에 계승합니다. 거기에 역사와 문화가 세월과 함께 구성되어 계승되어 가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교회를 포함한 일본사회가 알고 있는 일본의 역사는 재일의 교회를 포함한 재일의 사회가 알고 있는 재일의 역사와 겹쳐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와 교회는 그것을 한국교회를 포함한 한국사회가 알고 있는 재일의 역사와 겹쳐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일 한국조선인에 관계되는 3개의 역사의식을 하나로 겹쳐 맞추는 일, 그 공동의 기반위에 50년 이후의 전망을 개척하는 것이 금번의 국제심포지움의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외기협이 실시했던 caravan도 한국교회가 이미 회를 거듭하고 있는 「재일의 고난의 현장방문 프로그램」도 그것을 위한 하나의 준비이며, 금번 일본어판이 나온 「한일공동 booklet」도 역사의 공유의 계승을 위한 구체적인 취결로서 위치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명관 교수는 일찌기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의 역사를 예로 「소멸된 역사, 주연적인 것을 역사의 본류에 되돌리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저작을 포함 「한국사는 한국의 국토내에서의 역사만을 정당하게 간주하고 국토외에서 일어난 역사를 잘라버려왔던 것은 아닌가」라고 반성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재일의 고난의 현장방문」도 외기협의 카라반의 「고난의 현장방문」도 「소멸된 역사, 주연적인 것을 역사의 주류에 되돌리는 준비」이며, 正史에 기록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고될 「강제군대위안부」 문제도 전후보상의 큰 현재적 문제인 동시에 소멸된 역사를 본류에 바르게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에 빛을 밝히는 이상, 어둠을 빛가운데 끄집어내기 위한 노력이 문제의 본질을 보다 분명히 합니다. 일본사회의 하나의 경향으로서 전쟁의 피해체험이 강조되고, 가해체험이 잊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지명관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같이 일본사회도 피해체험, 戰災체험등의 국토내의 피해의 역사만을 정당하게 간주, 국토외에서 일어난 남경학살등 헤아릴 수 없는 침략과 가해의 역사를 잘라버리는 의식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사회와 교회가 침략전쟁하에서의 수많은 가해의 역사를 끌어내어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후 제암리교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만 최근 일본군에 학살된 29명의 그리스도인과 천도교신자의 수가 틀리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바르게 전하는 의미에서도 분명히 배워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 在日에서 來日의 시대로

이상과 같은 역사인식의 공유와 과제의 계승은 在日의 역사를 종축으로 삼고 세대에서 세대로의 계승할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사회도 교회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으로부터의 신1세라고 불리는 來日者와의 관계가 깊어져 왔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사회와 교회의 교회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인식의 결합이 新來日의 한국인과의 사이에 갭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차별의 측면에서는 재일의 사회도 한국에서의 新來日者를 포함, 동세대 간의 경험의 차이의 극복이 과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말한다면, 외국인 등록제도에의 반응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일본의 외국인 등록의 역사가 재일한국조선인 敵視정책을 근거에 두고 排除, 또는 동화를강제하기위한 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실태가 한국에서의 신래일자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의 지문압날인제도와 일본의 지문압날인제도와 질적인 차이를 제가 정확히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재일한국인에게 있어서 [인권문제]였던 지문압날인제도는 지문제도가 남아있는 영주자이외의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인권문제가 아니라고 하는것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에서의 신래일자에게 있어서도 인권문제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계승과 함께 동세대간의 인권문제등, 현재의 과제의 밑바닥에 있는 「일본사회의 질」의 문제 「일본의 國家義思」의 문제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위에 일본교회가 일본사회에 대해서 같은 과제를 재일의 사회와 교회이상으로 중요한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7. 끝으로

작년의 국제심포지움에서 우리들은 「교회가 공생사회의 모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는 것을 과제로 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또한 일본교회가 「공생사회의 모델」이 되어간다고 하는 자기인식에서 있습니다. 일본교회는 일본사회를 향해서 문기전에 재일의 인권과제등과 맞춰나가는 가운데 일본사회의 질적 변혁의 과제가 되어있는 것과 같은 질을, 일본교회 자신이 확실히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일본교회는 재일의 인권과제를 담당하는 것은 재일의 교회와 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교회와 사회가 짐지우게 하고 있는 것을 벗겨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일본의 교회와 사회는 스스로의 질적 변혁이라말로 중요하며 그것을 이루는 일이 재일의사회와 교회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이 됩니다만, 금년 1월, 외기협외 사무국장의 바톤이 재일대한국교회와 강영일목사로부터 일본인인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곤란한 직무인 것을 거듭 통감하고 있었기에 저는 받아들이는 일을 주저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문압날을 시작으로하는 반인권적 제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일어난 때, 당사자는 강영일목사를 시작으로하는 재일대한국교회였으며 재일한국조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받았던 것이 일본사회이며, 일본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제도였다는 것을 보면 그 시점에서 일본교회와 일본의 사회가 당사자로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책임인가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서라도 지금, 일본인이 이 과제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본사회는 국적과 민족, 문화와 종교, 생활 스타일에서 가치관까지의 차이를 가진 많은 사람들과의 공생의 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가운데 일본사회가 획득했던 중요한 시점은 「외국인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며, 지역의 주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중의 사회참가에의 의식이 높아지므로해서 상대적으로 국가의힘은 약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서냉전 구조가 종결된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힘에 대한 민중측에서의 검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하나의 시점은 하나의 키워드로서의 「주민」에 큰 의미를 갖게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상황을 반영해서 체재하고 정주하는 외국인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가능한한 내외국인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역공동체 주민의 공통의 과제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전망이 열려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사회는 단일민족국가라고 하는 환상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미 그 환상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교회는 그 전망을 향해서 메시지를 발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희망에 넘치는 상황을 참조하는데에 큰 장애로서 외등법은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에게 우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할 방향을 지향하는 일본사회에로 열려지기 위해서 외기협은 더욱 깊어져야 할 과제와 그것을 환수할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인권은 재일의 인권의 보장없이 있을 수 없으며, 재일의 인권은 다른 외국인의 인권의 보장없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일본이라고 하는 지역, 한국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각기의 교회가 각기의 사회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앞으로 더우기 중요한 과제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서는 그리스도에 붙잡힌 우리들은 「거기에는 이미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노예도 자유의 신분도 없고 남자고 여자고 없습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일본사회의 현실가운데에서는 유대인이 유대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인이 그리스국적으로 있다고 해도 한국인이 한국국적이든 재일이든 국적의 다름, 민족의 다름이 일본사회에서 살아가는데에 방해가 되는 것을 가능한한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인이 그리스인으로 장애가 있어도 장애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배려되는 것처럼 국적의 다름이 살아가는데에 방

해가 되는 것을 가능한 한 없애가는 일,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조성하는 일, 그것이 일본사회에 있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느낍니다.

패전후 50년은 50년의 시간의 경과속에 일본교회가 한일, 따랐던 일을 총괄하고 하나의 획을 긋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공동의 선언이 그룹협의에서 전체의 토의에서 더욱 깊어지고, 또는 개별적 과제의 연구의 보고를 받아들이고 한국교회, 재일의 교회 그리고 일본교회의 과제가 공유되고 확인되는 일이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戦後50年と日本教会の課題

外 幸 協 穂 鷹 守

日本の敗戦後50年の節目の年を前にして、戦後、日本の教会が歩んできた道を振り返り、在日韓国人との関係で、或いは、韓国の教会との関係で、50年以後、何を課題とすべきなのかを考え、それを提示することが私に求められたテーマであると思います。

しかし、戦後の50年を歴史的に、かつ学問的に検証する力量は、私にはありません。

外国人登録法の抜本的改正を運動を中心的テーマとしている組織からの発題として、私が、できる事は、戦後50年の出入国管理および難民認定法(入管法)、或いは外国人登録法(外登法)の変遷から、日本政府の戦後の在日韓国・朝鮮人政策を探り、そこに表現されている国家意思と、それを支えている日本人社会の意識を、私なりに取り出し、検証する事であります。その上で、日本の教会が敗戦後50年を節目とする新しい出発において、課題とすべきことを提示したいとおもいます。

後半のプログラムで、韓国の教会、在日の教会、日本の教会の三者が、それぞれの立場を越えて、共同で取り組む課題を見出すための協議が予定されていますが、その協議のきっかけになれば幸いです。

1. 富国強兵と脱亜入欧

1868年 近代日本の出発点としての「明治」が始まりました。それは、1889年 大日本帝国憲法の第1条で「大日本帝国は万世系の天皇これを統治す」と宣言した天皇制国家の出発点でありました。

明治政府は、国家の支配の正当性の根拠を「万世一系の天皇」に置き、欧米諸国に追い付き、追い越す事を目標に「富国強兵」と「脱亜入欧」を掲げて、帝国主義国家の仲間入りを目指しました。「富国強兵」を掲げて、1894の「日清戦争」1904年「日露戦争」と勝利を収め、アジア支配へと踏み出しました。「脱亜入欧」も、朝鮮半島を足掛かりに、大陸へ、南方へと、勢力拡大のためのイデオロギーとなりました。その流れの中で、1910年に韓国を併合し、1931年の「満州事変」から「偽満州国」の建国、1937年の日中戦争、1941年の米国、英国に対する宣戦布告へと、エスカレートしました。

欧米に追い付き、追い越す事を目標して突っ走った日本は、1945年、敗戦によって初めての挫折を経験しました。

この間、1873年に「キリシタン禁制」の高札が外されて、日本の社会は、ようやく欧米文化の中核であるキリスト教と出会うこととなりました。日本社会に根強いキリスト教に対する偏見を取り除くために、日本の教会は、積極的に社会に受け入れられるよう努力を重ね、それなりの成果を与えられてきたように思います。

しかし、もともと万世一系の天皇による国家統治の正当性の根拠を「神勅」に求めた天

皇制国家と、神の支配を信ずる教会とは、共存する事ができないはずのものであったと思いますが、非常に乱暴な括りかたをすれば、日本のキリスト教は、国家の支配の枠組みの中で妥協の道を探りつつ、徐々に教勢拡大の道筋を歩んでいたように思います。

朝鮮半島を植民地とした後は、植民地支配に便乗する形で、積極的に朝鮮伝道へ、中国伝道へと進出して行きました。その中で、戦時中は、みずから神社参拝を受け入れ、朝鮮の教会の信仰を貫く闘いに連帯するのではなく、逆に神社参拝を受け入れるよう説得するなど、現代から考えると、見るにたえない姿をさらしました。

それは、公認されて数十年の日本の教会として、生き残るための努力と言えない事ありませんが、戦後、1967年にて当時の鈴木議長名で発表された、日本基督教団の「戦争責任に対する告白」の認識に従えば、むしろ「祖国が罪をおかしたとき、教会もまたその罪におちいりました」というように、積極的に罪をおかしたた教会の姿が見えてきます

1945年8月15日。日本の国家も教会も大きな挫折を経験しました。しかし、国家も教会も、明治以降、歩み続けてきた道の誤りを認めただけではありません。

日本基督教団が、不十分であっても罪を告白し、新しい歩みをはじめたのは1967年の事でした。

2. 植民地支配と戦後処理

1910年の韓国併合によって、当時の韓国民は、本人の選択の余地なく「日本帝国臣民」とされました。以来、1945年の日本の敗戦、朝鮮半島の解放のときまで、韓国人は、「大日本帝国」が侵略戦争の道に向かう時の流れの中で、一貫して日本の国家と国民によって収奪され利用される存在でした。

韓国民にとって忘れ難い植民地支配の歴史は、両国民の新しい交流に於いても、絶対に忘れ去られてはならない歴史であると思います。

しかし、時代を経るにつれて、歴史に対する認識の差は、韓国と日本において、或いは世代を重ねるにつれて、どんどん差が開いてき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

1910年以降に生まれた人々と、同時代を生きてきた日本人は、その歴史を心に深く刻み、日々の営みにあたって常に想起し、相互関係の発想の原点にすべき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ここは、個人的体験を語る場ではありませんが、1929年に生まれた私は、当時の朝鮮人の友人の事を、いくばくかの罪の意識を持って思い返す時がしばしばあります。しかし、それは多分、同時代を生きて日本人と朝鮮人との関係に於いて起こった多くの出来事の一つと同じであろうと思います。

私が、在日韓国朝鮮人と出会い、或いは在日韓国朝鮮人の人権問題を考えるとき、それは、大袈裟に言えば、罪責感というか、棘のような存在となっています。それが、私を、韓国朝鮮人との出会いに向かわせている原点である事は否定できません。詳しくお話しする時間がないので、それだけをお伝えして、先に進みたいとおもいます。

1910年に、一方的に「日本帝国臣民」とされた人々は、1952年に日本国と連合国が締結した平和条約の発効日までは、法的には「日本国籍」を持っていました。

しかし、日本政府は、朝鮮人が、国内の異民族として在日し続けることに大きな危惧を抱いていました。

第一に、「日本民族中心の国づくり」へ回帰しようとする旧支配層の思惑でありましたが、結果として、敗戦後の大震災失業の中で、軍人、軍属や一般人の引揚げ者、戦災被害者の日本人よりもさらに最底辺に、法的に無権利の在日韓国朝鮮人を組み込んでいくという社会構造を生みました。欧州諸国などが、旧植民地出身者に市民権を与えていったのと異なり、1952年には、在日韓国朝鮮人を「出稼ぎ労働者並み」の地位として扱う「出入国管理令」の制度が確立します。

第二に、朝鮮半島・中国における社会主義政権の成立を恐れたGHQと日本政府は、早くから共同で、在日韓国朝鮮人の治安管理を必要と考え、連合国の占領下で、1947年には、外国人登録令によって「みなし外国人」という特殊な地位に置きました。また、GHQが、「朝鮮人は、ある場合には戦勝国民として、ある場合には旧敵国民として扱ってよい」との指令を出した結果、「民主化」政策は在日韓国朝鮮人には全く無縁のものとなりました。

外国人登録令から出入国管理令に引き継がれた「退去強制条項」は、常に、最終的な政治弾圧の武器として、このときから現在に至るまで、一貫して維持されています。

日本の教会は、この時期「平和・民主主義」を掲げつつ、1950年に始まる朝鮮戦争に対して「韓国難民救援」などに取り組みましたが、植民地支配と戦後国際政治の谷間で翻弄されつづけた在日韓国朝鮮人の人権状況に目を向け発言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このような教訓からも明らかなのは、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の歴史への責任を厳しく問い直して、教会自身の歴史観を正す事が大切であると言う事です。

3. 最初の戦後補償から、国籍による排除は始まった。

平和条約の発効を待っていたかのように、日本政府が実施した最初の戦後補償は「戦傷病者戦没者遺族等援護法」でした。

この法律の目的は、「国家補償の精神に基づき、軍人軍族等であった者またはこれらの者の遺族を援護する」と規定されています。その後も、この援護法関係の法律が順次制定され、戦没者の妻、兄弟、さらに父母と、実にきめ細かく補償がなされますが、これらの援護法関係の全てに「日本国籍の者」という条件をつけて、日本人と同じに困難な生を強いられた主として韓国朝鮮人は、最初の戦後補償から排除され始めたわけです。

1953年8月には、軍人を含む恩給制度が復活しています。これは、「現在の惨澹たる窮境をもたらした最大の責任者たる軍国主義者が、極めて特権的な取扱いを受ける制度は廃止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占領軍からの指示で停止されていたものの復活でした。

そこには、あの戦争で、だれが被害者であり、だれが加害者であったかという反省の一片も感じと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の政府の考え方が具体的な言葉となって表現されたのは、1964年の天皇誕生日を期して再開された戦没者叙勲に当たって発せられた、当時の池田総理大臣の談話でした。彼は「今次の戦争において、祖国のために尊い生命を捧げた方々に対して、国として感謝の誠を捧げ、その生前の功績を顕彰するものであり……」と

語った事が伝えられています。

天皇の命令で、好むと好まざるに関わらず一方的に侵略戦争に駆り出されたにせよ、アジアの各地で、2000万ともいわれる民衆の死に直接、間接に加害者として振る舞ったであろう戦没者の、「生前の功績を顕彰する」という意識には、戦争責任の視点はまったく見られません。日韓交渉は、当時中断していましたが、その最大の理由は、久保田発言がきっかけだったといわれておりますが、それ以前に、日本政府代表が「植民地支配は正当であった」との主張を繰り返し、韓国内に残された日本の資産の返還を求めた事から始まったといわれますが、それと同様に、池田総理大臣の意識には、あの戦争が侵略戦争であり、植民地支配は誤りであったとの認識は、まったく見られません。むしろ、富国強兵と脱亜入欧を目指した明治以来の日本の進んできた道筋が、この時代、敗戦という挫折を克服して新たな装いのもと経済的侵略に向けて発進しはじめた時代を感じさせます。

ごく最近まで、様々な場面で繰り返される、閣僚や、国会議員の妄言は、実は、妄言ではなく、戦前も戦後も断絶することなく、一貫している保守政治体制の中核にある日本人の本心の吐露である事が理解されると思います。

それは、「大日本帝国」時代から続く自民族中心主義・天皇中心の歴史観、「東洋の盟主」を気取った戦前からの傲慢の継続であります。さらに、それに加えて、朝鮮戦争・ベトナム戦争景気を踏み台にして、アジアへの「賠償金」さえ経済援助にすり替えていった「経済大国・日本」が誕生する過程で、小沢一郎に代表される世代にも再生産されていった大国的傲慢です。

村山政権でさえ、形式的に「侵略行為」は認めても法的な犯罪性を認めず、国家責任を明確にしようとしませんが、ここにも歴史認識の不足と共に大国的傲慢が見え隠れしています。アジア諸国の政府も、経済援助をちらつかせれば納得するだろうという官僚の政治的計算が、日本の戦後補償への真剣な検討を妨げているようにも思われます。

1965年の日韓条約も、戦後補償の視点から見直すとき、欺瞞性を指摘せざるをえません。日韓条約への反対運動は、日本の教会では朝鮮戦争を契機として起こった「キリスト者平和の会」を中心に、市民運動の一環としてありました。しかし、そこでの日本人の運動は、韓国に対する日本の「経済侵略」、米国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軍事同盟」、朝鮮半島の「南北分断強化」に対する反対に集中していました。

日韓条約には、1947年の外国人登録令以来一貫している在留そのものの国籍条項である退去強制を含む、日韓法的地位協定の問題がありましたが、日本人の運動には、在日韓国朝鮮人の法的地位問題への十分な認識がありませんでした。在日韓国青年年同盟などの運動に対する連帯も起こりませんでした。日本の戦前も戦後も一貫して排除されてきた在日韓国朝鮮人だけが、欺瞞を見抜いていた少数者（マイノリティ）でありました。

今日、戦後補償が多くの市民団体や国際的な連帯まで広がる日本における基礎を築くことができたのは、在日韓国朝鮮人による人権運動が大きな背景にあったからだと思います。

日本国籍を剥奪して、無権利状態に放置すれば、帰国するか帰化するだろうと考えていた日本の支配層、そして同様な認識だった日本社会は、70年代に様々な異議申し立ての運

動に直面することになります。「国籍差別」「外国人管理」など、65年の日韓条約が何等解決しなかった問題が焦点となる、日立就職差別事件、出入国管理改悪法案、退去強制事件などをめぐる在日韓国朝鮮人の闘いに連帯して、日本の教会の中からも、地域の労働者・市民などと闘いに参加する教会ができました。70年代になってはじめて、私たちは、「国籍（市民権）」を奪ってきた戦後の朝鮮人管理の重大性に気付かされたのです。

在日韓国朝鮮人自身が、「在日として」発言することは、植民地時代から継続する日本の「同化（皇国臣民化）主義」と真っ向から対決して自ら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取り返す闘いでした。そういうマイノリティとしての苦闘の傍らに立った日本人キリスト者は、彼等・彼女らをこうした苦悩の現実において「日本の問題」を問わざるをえない場に立たされました。それが、キリスト教会の「戦争責任」を問い続ける姿勢や、天皇制に象徴される自民族中心主義、差別的同化主義を問う姿勢にも繋がってきたと思います。

4. 日本の教会の戦い。特に外国人登録法改正運動から見てきたこと

日本が「単一民族国家」であるというのは幻想であり、神話にすぎないということは、日本の教会や市民社会の良識を形成する部分が、これまでも繰り返し、繰り返し語ってきたことでした。日本社会を構成する人々には、古くはアイヌ民族があり、近世になっては日本の最初の植民地ともいえる沖縄の人々が数えられることについては、日本社会の多くの人々に意識され始めています。

日本的意識へ強く同質化を求める社会は、これまで、これらの人々を「日本人」として民族の中に囲い込み、「見えない人々」にしようとしてきました。そして、同じ道へ追い込まれようとしていたのが、在日韓国・朝鮮人であり、台湾出身者でありました。

日本の敗戦後、韓国朝鮮人、台湾人など旧植民地出身の人々の多くは帰国し、日本の植民地支配から解放されましたが、アイヌの人々、沖縄の人々は日本の敗戦によっても、当然には解放されませんでした。

しかし、彼等が、それまでも、それ以後も、同化を強制する日本社会に対し、異議申し立てをしてこなか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アイヌの人々は、「旧土人法」という屈辱からの解放を求めて運動を展開していましたし、民族の文化的、宗教的伝統を回復し、或いは守るために、運動を継続していました。そして、運動の流れの中の大きな出来事として、民族の代表者を国会に送り出す事ができました。今後の民族回復の運動に大きな力とな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朝鮮半島と同じように、日本のアジア侵略の基地としての役割を強いられてきた沖縄でも、天皇制の延命工作の犠牲になって、多数の住民が巻き込まれて死んだ沖縄戦の経験から、再び、そのような立場に置かれることを拒否する意思表示が表れてきました。その一つとして、日米安保条約に基づいて設置されている米軍基地に反対する運動から、民族としての言語と文化を取り戻そうとする若い世代の運動が育ってきています。

また在日韓国朝鮮人に対する差別的指紋管理という非人道的な制度に抗議した事によって反外登法運動は、植民地化や皇民化政策、戦後の単一民族主義政策によって踏み躪られ

てきた他のマイノリティ集団への非人道的な政策との共通性をも見出だしました。在日韓国朝鮮人自身が、本名を名乗り、言葉と文化歴史観を取り返そうとする闘いは、アイヌ、沖縄の人々、被差別部落民、さらには海外のマイノリティや先住民とも共通する課題であることが、80年代から90年代の反外登法運動の中で指摘されてきました。

いまや日本の教会は「外キ協」に連なることで、「宣教の課題」の中心に、この「人権・歴史・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に関わる問いを据える必要を認めています。

具体的に立法の課題となった外登法抜本改正について、私たちは日本社会をも説得する論理として、次のような「権利」の概念を提示してきました。

第一に、国籍、歴史性、法的地位を問わない、全ての外国人に適用される人としての「基本的人権」があります。指紋を差別的に採取・管理されないというのはこの基本権であって、日本人に適用される制度がない以上、あらゆる外国人について指紋制度は廃止されるべきであります。

第二に、歴史的経緯と生活の実態から住民として扱われるべき「居住権」があります。登録証明書の常時携帯義務をはじめとする管理制度や、住民基本台帳制度より厳しい重罰制度は、在日韓国朝鮮人をはじめとする定住外国人を、地域住民という権利主体としてとらえるとき、解体可能であると考えます。

居住権、或いは在留権については、長い裁判闘争の歴史を持っておられる在日大韓基督教会の崔昌華牧師から、裁判についてのご報告をいただき、在日の永住権問題に就いて発言して頂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第三に、歴史的な民族マイノリティ集団に対し認め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権利として、歴史観、文化を回復し受け継ぐ教育や文化的活動を積極的に補償される権利があります。名前や言葉まで奪う皇民化・同化教育をお仕付け^{た使}には、積極的に財政措置を講じてでもこれを「償う」責任があります。

また、公教育の場に外国籍の教師を採用したり、日常生活に密着した地方自治体の公務員に一定の比率で韓国朝鮮人の採用を義務付けたり、民族コミュニティの代表を行政・立法へ参加させその声を反映させる制度措置を作る事などの積極的措置が、民族敵^的マイノリティと共にある「共生社会」に質的変換を志す日本社会には不可欠の前提です。

これらは、特に在日韓国朝鮮人の権利として認められるべきであります。

1985年の日韓法的地位協定を置き換える国内措置として1990年に「日韓合意」がなされ国内措置として「入管特例法」による特別永住資格の設定、「外登法の改正」などがありました。これらの権利の一つをも認めていません。

1992年施行の新外国人登録法の、「永住者の指紋押捺廃止。代替措置として署名登録と家族関係事項の登録を導入」という扱いは基本的人権としての指紋問題をとらえた解決ではありませんし、教師・公務員への採用、地方自治への参加に対する日本政府の解釈への韓国政府の妥協も、居住の権利性を持たない外国人としての位置付けに基づいており、在日韓国朝鮮人に対しての理解を欠いています。従来の入管制度の思想を越え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ただ、韓国籍、朝鮮籍を問わず、子々孫々まで永住資格を与える事になったことは、日

本は少数ではあれ、一時滞在でない、歴史的な外国籍コミュニティを認めたことになりました。しかし、「民族として」国内に異質な存在を認め権利を認める事を避けようとしています。民族として生きる課題が、在日韓国朝鮮人の側に投げ掛けられたわけですから、彼等との共生を願う日本社会と教会にも共同の課題となってきたことを受け止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日本の社会が、抱えている民族的マイノリティーの問題について、最近開催された「マイノリティ問題と宣教戦略国際会議」の報告も用意されています。グループに分かれた協議の中で、全体の討議の中で、さらに議論が深められる事が期待されています。

アイヌ、沖縄、韓国、朝鮮、台湾などの人々のほかに、日本の偏った経済発展から生じた経済の不均衡のゆえに「豊かさ」の配当を求めて、「貧しくされた」アジア、アフリカ、中東地域などから多くの人々が労働者として日本社会に定住して働いています。彼等、彼女らの多くは、正規の働くためのビザを持たない人々であるにせよ、現実には、日本社会を構成している存在になっています。

また、日本の労働力不足の解消のために、門戸を開けた日系人の労働者とその家族が多数、これは正規のビザで定住し、或いは移住して働いています。そのほか、欧米人ばかりではなく、ほとんど世界の各国から多くの国籍と民族を異にする人々が居住しています。

これらの事は、数の多寡は別として、日本社会は幻想としての「単一民族国家」ではなく、既に現実には、多国籍の多民族の国家になっていることを表しています。

この現実が日本の教会にもたらす課題も、また多様になっていくことは避けられません。多くの教会に、日本国籍以外の人々が訪ねてきています。そして、教会もこれらの人々を受け入れています。日本社会が「外国人労働者問題」として先に受け止めた課題を、日本の教会は、少し遅れて、受け止め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の後の時間で韓国教会からも「外国人労働者運動」の報告があるようですが、深い学びを共にし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

5. 日本社会と日本の教会の覚醒のために

日本の社会、在日の社会を含め、世代交代が進みつつあります。その中で、在日の歴史を共有する人々が、少なくなっていくことは避けられない事実です。しかし、日本の敗戦から、たかだか50年杉田だけなのに、その歴史を人々の意識の中から取り去る事はできないはずで

す。在日のI世と同時代を生きた日本人は、それぞれの生を検証し、それをII世に伝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ます。それが、人種、民族を問わず人類に課せられた課題であろうと思うからです。歴史はそのように継承され、形成されるものであると思います。

II世はI世から受けたことに、自らの経験を加えてIII世に継承する。そこに、歴史と文化が年月と共に構成され、継承されていく過程が現れていると考えます。

日本の教会を含む日本社会が知識とする日本の歴史は、在日の教会を含む在日の社会が知識とする在日の歴史と重ね合わされる事が必要であると考えます。そして、韓国の社会と教会は、それを韓国の教会を含む韓国社会が知識とする在日の歴史と重ね合わせる必要

があると考えます。

在日韓国朝鮮人に関わる三つの歴史認識を一つに重ね合わせる営み。それ共通の基盤として60年以後への展望を切り開く事が、今回の国際シンポジウムの課題の一つ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昨年、外キ協が実施したキャラバンも、韓国教会が既に、回を重ねている「在日の苦難の現場訪問プログラム」も、そのための一つの営みであり、今回、日本語版ができた「日韓共同ブックレット」も歴史の共有と継承のための具体的な取組として位置付ける事ができると思います。

池明観教授は、かつて、関東大震災の朝鮮人虐殺の歴史を例に「消去された歴史、周縁的なものを歴史の本流に戻す営み」が必要であるといわれたことがあります。また、ご自分の著作を含め、「韓国史は韓国の国土内での歴史のみを正当と見做して、国土外で起こった歴史を切り捨ててき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反省も記しておられました。

韓国教会の「在日の苦難の現場訪問」も、外キ協のキャラバンの「苦難の現場訪問」も「消去された歴史、周縁的なものを歴史の本流に戻す営み」であり、正史に記す営みであると思います。後で報告される「強制軍隊慰安婦」問題も、戦後補償の大きな今日の問題であると同時に、消去された歴史を本流に正しく記録する営みの一つであるとおもいます。

闇に光を当てる以上に、闇を光の中に取り出す営みのほうが、問題の本質をより明らかにします。

日本社会の一つの傾向として、戦争の被害体験が強調され、加害体験が忘れ去られようとする傾向がありますが、池明観教授が指摘されるように、日本社会も、被爆体験、戦災体験などの国土内での被害の歴史のみを正当と見做して、国土外で起こした南京虐殺など数知れぬ侵略と加害の歴史を切り捨てる意識が働いている、と指摘する事もできると思います。日本の社会と教会が、侵略戦争下での数々の加害の歴史を掘り起こし、語り伝える事の重要性を、改めて認識させられております。

私は、明後日に堤岩里教会を訪れる予定にしておりますが、最近、日本軍に虐殺された29人の方々のキリスト教徒と天道教信徒との数が違うのではないかと、という質問を受けました。歴史を正しく伝える意味でも、きちんと学んで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6. 在日から来日の時代へ

以上のような歴史認識の共有と課題の継承は、在日の歴史を縦軸に据え、世代から世代へ継承することを中心に考えてきました。しかし、日本の社会も教会も、前に述べたように、韓国からの新I世と呼ばれる来日者との関わりが、深まってきています。

そんな中で、日本の社会と教会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歴史的知識の欠落が、新来日の韓国人との間にギャップを生じていると指摘される例が増えていきます。

また、別の側面では、在日の社会も、韓国からの新来日者を含め、同世代間の経験の差異の克服が課題となっているとも聞いています。

私の問題意識からすれば、外国人登録制度への対応にも違いがあるように思います。日本の外国人登録の歴史が、在日韓国朝鮮人敵視政策を根底に置き、排除、または同化を強

制するための法として機能している実態が、韓国からの新来日者には、良く理解できない部分ではないかと思えます。韓国の指紋押捺制度と、日本の指紋押捺制度との質的な違いを、私が正確に言い当てることは難しいのですが、在日韓国人にとって「人権問題」であった指紋押捺制度は、指紋制度が残っている永住者以外の外国人にとっては「人権問題」ではない、とすることは出来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それは、韓国からの新来日者にとっても「人権問題」のはずです。

歴史の継承と共に、同世代間の「人権問題」など、現在の課題の根底にある「日本社会の質」の問題、「日本の国家意思」の問題についての共有が必要だと考えていますが、それ以上に、日本の教会が、日本の社会に対し、同じ課題を、在日の社会や教会以上に重い課題としておっていることを感じないわけにはいきません。

7. おわりに

昨年の国際シンポジウムで、私たちは、「教会が共生社会のモデルになることを目指す」ことを課題とすることを表明しました。

それは、現在、未だ日本の教会が「共生社会のモデル」となり得ていないという自己認識にたっています。日本の教会は、日本の社会に向けて問いを発する以前に、在日の人権課題と向き合う中で、日本社会の質的変革の課題とされていることと同じ質を、日本の教会自身が、しっかりと持ってしまっていると感じてきました。

日本の教会は、在日の人権課題を担うことは、在日の教会と社会に担わせている重荷を、代わりに担うことではなく、日本の教会と社会が、担わせているものを取り除く事であることに気が付いてきました。繰り返しになりますが、日本の教会と社会は、自らの質的変革こそが重要であり、それを遂げる事が、在日の社会と教会のおっている重荷を取り去ることであることに気が付いてきました。

個人的な感想になりますが、今年の一、外キ協の事務局長のバトンが、在日大韓基督教教会の姜栄一牧師から、日本人である私に手渡されました。困難な職務である事を重々承知しておりましたから、私は、受けとることに躊躇いたしました。しかし、指紋押捺を始めとする反人権的の制度に対する異議申し立てが起こった頃、当事者は、姜栄一牧師を始めとする、在日大韓基督教教会であり、在日韓国朝鮮人でありました。

しかし、異議申し立てを受けたのが、日本の社会であり、日本の社会が維持している制度であつてみれば、その時点で、日本の教会と日本の社会が当事者として受けて立つべきであったことを考えれば、私が適任かどうかは別なこととして、今、日本人が、この課題を担う事はむしろ当然であると思えます。

今日、日本社会は、国籍と民族、文化と宗教、生活スタイルから価値観までの違いを持つ多くの人々との共生の課題を引き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あります。外国人登録法の改正を求める運動の中で、日本社会が獲得した重要な視点は、「外国人も地域社会の構成員であり、地域の住民である」という事でした。現代の民主主義社会では、民衆の社会参加への意識が高まる事によって、相対的に国家の力は弱まる事が望ましいと考えます。

東西冷戦構造が、終結した今こそ、国家の力に対する、民衆の側からの検証が必要なきときであると考えます。そのときの一つの視点、一つのキーワードとしての「住民」に、大きな意味を持たせる事が必要であるとおもいます。

時代状況を反映して、滞在し、定住する外国人も住民である、と位置付け、彼等の人として生きる条件を、可能な限り内外人平等に近付けることを、地域共同体住民の共通の課題とすることができれば、新しい展望が開かれるものと信じています。

そこから、日本社会は、単一民族国家という幻想から解放されるでしょう。既に、その幻想から解放されるための、メッセージを示されている教会は、その展望に向けたメッセージを発信することが可能になるでしょう。

そのような希望に溢れた状況を創造するための大きな障害として、外登法は立ちはだかっています。全ての外国人に、まず、社会の構成員としての普遍的な権利を保障する方向を志向する日本社会へと、開かれるために、外生協は、なお、担うべき課題と、それを果たすべき責任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日本人の人権は、在日の人権の保障なくしては有り得ない事であり、在日の人権は他の外国人の人権の保障なくして守られない事を、日本という地域、韓国という地域にあるそれぞれの教会が、それぞれの社会に向けて、語り続ける事が、今後、さらに重要な課題となる時代が到来していると感じています。

聖書は、キリストに結ばれた私たちは、「そこではもはや、ユダヤ人もギリシャ人もなく、奴隷も自由な身分のものもなく、男も女もありません」と伝えています。しかし、私は、今日の日本社会の現実の中では、ユダヤ人がユダヤの国籍をもっている、ギリシャ人がギリシャ国籍のままであっても、韓国人が韓国籍であろうと在日であろうと、国籍の違い、民族の違いが、日本社会で生きていくための妨げになることをできるだけ取り除く事が必要だと感じています。それは、ユダヤ人がユダヤ人のままで、ギリシャ人がギリシャ人のままで生きられる社会を日本社会が用意することであると考えます。障害者が、障害があっても、障害がないかのごとく生きられるように周囲が配慮するように、国籍の違いが、生きていくための妨げになる事をできるだけ取り除いていくこと、基本的人権が守られる社会を整えていくこと、それが日本社会にある教会の役割であると感じています。

敗戦後50年は、50年の時間の経過の中で、日本の教会がしたこと、しなかつたことを総括する一つの区切りの年でもあります。この場に集められた、私たちの共同の宣言が、グループの協議で、全体の討議でさらに深められ、或いは、個別の課題の取り組みの報告を受けとめ、韓国教会、在日の教会そして日本の教会の課題が共有され、確認されることが、新しい出発に際し、期待されています。

おわり

事例報告 1 (日本側)

外国人등록법.법적지위문제의 오늘의 과제

야와따 아끼히꼬

(NCCJ 재일의국인의 인권위원회)

1. 지문.상시 휴대제도에 새로운 판단

- 1) U.N 규약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국제인권 규약 위반 시정 권고
- 2) 최선에 재입국권 소송 역전승소(2심)
- 3) 부당체포 국가배상청구 승소(2심)
- 4) 구 등록원표 폐기 가치분신청 기각 - ?
- [특별영주자] 에 대한 지문.카드 강제가 부당함은 밝혀

2. 모든외국인에 있어서의 외국인등록법.출입국관리법 문제

- 1) 이주 노동자 관리로 중점을 옮긴 출입국 관리정책
- [개표]의 재현 : [불량외국인]판에 의한 선별 정책
- 2) [영주](한국,조선인 등) : 지문 면제, 가족등록,서명
[비영주](일계인.배우자 등) : 지문날인
[미등록 (undocumented)노동자]: 외국인 등록증 조차 없음
- 3자의 연대 가능성(지역 외기련의 활동 다양화)
- [민족차별]의 공통성과 법적지위의 차이
- 3) 출입국관리.국적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 거주권 리성([외국인 관리]의 철폐)
- 배우자 및 일본 출생아의 안정된 체류자격 (종속적이지 아닌 [이주자] 자격의 확립)
- 국제 Couple의 자식들의 일본/외국국적 취득
(가족제도에 기초하지 않은 권리로서의 국적)
- 지위합법화 프로그램(미등록 노동자의 구제처치) 등등

3. 전후처리문제로서의 [국적에 의한 차별] 비판

- 1) 국적조항.호적조항에 의한 배제의 부당성 비판(교원.공무원 취직, 국민연금,전상병자 원호법,공직선거법)
- 2) [위국인 주민]인 지위보장이라는 논리,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현행법상도 보장되어야 할 정치 참여.행정 서비스
- 3) 이중 국적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혈통주의 [강제선택제] 국적법의 문제
- 결국 전후처리의 잘못을 [원상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민족적 Community(공동체)의 입지.권리보장에서 시작된다.

4. 패전후(해방후) 50년에 있어서의 외국인 등록증 대량갱신의 일환으로

- 1) 전후 50년에 [재일] Community는 무엇을 자기주장 할 것인가?
- 2) [역사]를 총괄해야 할 일본(소수자의 시점에서)
- 3) 법의 목적까지 포함한 [재점토]의 97년을 앞서서
- 4) 한.일조약(법적지위협정) / 92년협정의 재점토

事例報告 ①

外登法・法的地位問題の今日的課題

八幡明彦 (NCC在日外国人の人権委員会)

- 1) 指紋・常時携帯制度に関連するあらたな判断
① 国連規約人権委員会 (Human Rights Committee) の規約違反是正勧告
② 崔善愛 再入国権訴訟 逆転勝訴 (二審)
③ 不当逮捕国家賠償請求 勝訴 (二審)
④ 旧登録原票 廃棄 仮処分申請 棄却 ⇒ ?
「特別永住者」にたいしての指紋・カード強制の不当性は明らかに
- 2) すべての外国人にとっての外登法・入管問題
① 移住労働者の管理に重点を移した入管政策
「犬の鑑札」の再現: 「不良外人」観による選別政策
② 「永住」(韓国朝鮮人等) : 指紋免除・家族登録・署名
「非永住」(日系人・配偶者等) : 指紋押捺
「未登録(Undocumented)労働者」: 外登さえなし。
の三者の連帯の可能性(地域外キ連の活動の多様化)。「民族差別」の共通性(ex. 入居差別)と、法的地位の違い。
③ 入管・国籍政策への要求事項
居住の権利性(「外国人管理」の撤廃)
配偶者または日本出生の子の安定した在留資格(従属的でない「移住者」資格の確立)
国際カップルの子の日/外 国籍取得(イエ制度に基づくのでない権利としての国籍)
地位合法化プログラム(未登録労働者の救済措置) などなど
- 3) 戦後処理問題としての「国籍による排除」批判
① 国籍条項、戸籍条項による排除の不当性批判(教員・公務員採用、国民年金、戦傷病者援護法、公職選挙法)
② 「外国籍住民」たる地位保障という論理
地方自治の主体として現行法下でも保障されるべき政治参与、行政サービス
③ 二重国籍への権利について
血統主義「強制選択制」国籍法の問題点
結局、戦後処理の誤りを「原状回復」に近づける唯一の方法は、民族的コミュニティ(共同体)の認知・権利保障である。
- 4) 敗戦後(解放後)五十年における外登法大量切替の年へ
① 戦後五十年に在日コミュニティは何を自己主張するか?
② 「歴史」と向き合うべき日本(「国家の狭間」にある少数者の視点から)
③ 法目的含めた「見直し」の97年を前に
④ 日韓条約(法的地位協定) / 92年協議の再検討

일.한 재일교회공동 자료집

吉高叶 教授

소수민족의 문제와 선교전략 구체회의

이청일 목사
(재일대한기독교단)

재일동포 고난의 현장방문

노정렬 목사
(광주 NCC 중경회장)

광주 N.C.C. 인권위원회에서 지난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재일동포 고난의 현장을 방문한 결과, 교회 지도자들과 동행한 우리 일행은 과거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만행을 돌아보고 참참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고 분노의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이 땅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될 공동의 사명을 생각해 볼때, 이제는 과거를 거울 삼고 역사와 감정을 초월하여,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역사의 비극을 함께 이해하고 우리의 고통을 나누어 주는 한일 양국 교회 지도자들과 온 교회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더욱 화합과 친교, 그리고 협력하여 앞으로 남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이번 한.일 국제 심포지움을 맞이하여, 우리의 입장을 몇마디 남기며 사례보고를 합니다.

I. 재일동포 고난의 현장 방문 기행

1) 나고야(名古屋) 집없는(homeless)노동자, 무직자들의 광장을 방문

① 여기는 나고야에서 제일 번화한 사카에마치(榮町) 네거리에서 약130명의 홈레스 노동자들이 매주 2회씩 나고야시의 개신교회와 카톨릭에서 번갈아가면서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8시에 이장소에서 무료급식하는 프로그램을 무려 20년 동안해 왔다는 사례.

② 문제는 이들을 기독교에서는, 인권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야할지 막막한 입장임.(나고야역까지 합하면 약300명)

③ 그들은 젊어서 허랑방탕하여 지금에 와서 노년기에 가족들에게 외면당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자.

④ 해결 방법은 일시적인 기독교 계통의 급식이 문제가 아니라 부강한 일본 정부가 보다 더 구체적인 장기 계획이라도 수립하여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급선무로 여겨짐.

2) 기후켄에 있는 구구리(久口利) 지하 군사공장을 방문.

① 이 공장은 일제가 대동아 전쟁말기에 미쓰비시 비행기 공장의 부품 제작을 위해 만든 땅굴인데 38개의 땅굴을 파서 지하에다가 거미줄 같이 교차되는 거대한 군수공장이다. 크기는 높이가 2m, 폭이 4m, 길이는 8Km. 그안에는 변전소, 창고, 진료소, 식당등을 공장으로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었음.

② 또 이 굴은 바위로 된 산을 뚫어 두개의 산을 연결 하였으며 여기게 동원된 인원은 1만여명이고 모두 조선에서 강제로, 혹은 사기로 끌려온 청소년들이나 또는 징용으로 연행된자들.

3) 가나야마 수력발전소(방문시 유인물에는 마루야마(丸山)로 되어있다.)

① 이곳 역시 일본 군국주의가 조선에서 강제로 징용으로 끌고 온 이들과 청소년들로 주를 이뤘다.

② 사망자 비석(위령비)은 지금까지 허술한 상태로 희생자의 이름이 일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조선인이다(일본인 식의 일본이름이 아닌, 예를 들면 하야시(林) 가나모토(金本)등).

4) 나가노켄(長野縣)에 있는 마쯔시로 대본영(大本營).

① 마쯔시로 방문에 앞서 전날 당시 현장의 증인으로 [松代大本營의 保存推進會]會長 아오게 다카슈(青木孝壽)선생이 무려 3시간의 역사의 과정을 설명해주므로 예비 상식을 가지고 다음날 현장에 갔다.

② 1944년(昭和19年) 11월에서 시작하여 45년 8월 15일까지 9개월 동안에 그 거대한 지하 "토-찌카"라고 할 수있는 일본 대본영을 강제로 건설했다는 것은 엄청난 강제와 희생을 예측 할수있음.(겨울에 동사,아사,영양실조,구타사,다이나마이트 폭발사 등)

③ 이 굴은 총연장 10.1Km에 달했고, 폭이 4m, 높이 2.2m. 이 산은 단단한 화강암, 공사기간이 시급하여(일본 패망이 눈앞에 보임)단축공사, 철야공사, 재축한 공사로 다이나마이트 연속폭파.

④ 이 굴의 목적은 거대한 지하요새로 먼저 조-산(코끼리 산)에는 일본

N.H.K.방송국과 정부기관 그 다음에 마이주르산에는 천황과 황후 그리고 궁내청과 일본 대본영이 들어가게 되었고 또 미나가미산은 식량 창고가 들어가며, 또한 여기에다 천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기(神器)를 보관하는 신사(神社)를 지하에 건설하여 천황이 거소하는 곳에서 60m를 깊이 파 공습시 천황의 피난소를 만든것.(지금은 일본 지진 측정 연구소)

⑤ 또 이곳에 동원되는 조선의 징용자, 청소년들을 연행하는 과정은 일본 북쪽 동해에 접한 토야마(富山)에서 나가노(長野)현장까지 기차로 수송했는데 일본 국민들의 눈을 의식하여 밤에 화물차에 짐작같이 실어 날음.

5) 교토(京都)의 귀무덤(혹은 코무덤)방문.

① 과거 임진왜란때(일본에서는 조선토벌이라고 교과서에 써어있음).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의 남.녀 귀를, 혹은 코를(몇개인지 기억이 안남. 아마 2만개?인지....)베어 소금에 절여서 가지고 자기의 승리의 증표로 과시했다고 함.

② 그 옆에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타던 말을 모셔놓은 신사가 있음(마치 도교의 메이지 징구-가 명치 천황의 유물을 모셔놓은것과 같은...) - 이것도 과거의 동포의 고난의 현장이다.

6) 히로시마(廣島)방문.

① 일본 방문중 빼어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우리 일행은 교토의 관광 코-스를 포기하고, 계획에 없던 히로시마를 방문하였다.

II 우리의 견해

1. 자세하게 기록은 못했으나, 대동아 전쟁의 비극의 현실적으로 남은 미 해결 문제.

①. 정신대, 위안부 문제.

②. 정신대 난문제.

1965년 6월 22일에 조인된 '한일기본조약'을 보면 과거 청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단지 제2조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당시,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국무총리 김종필때 조인됨)는 문구가 정신대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임. 그리하여 일본 정부는 배상도 아닌, 보상도 아닌, 또 청구권도 아닌, 다만 [독립 축하금]으로 주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일본 교회 지도자들에게 협력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인권문제(정신대, 위안부 문제)에 일본정부가(무라야마 정권)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나, 1910의 양국간의 체결된 조약이 걸림돌이 되어 있으니, 이 조약을 폐기하기는 어려우나 수정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으니 여기에 최대의 협력을 바라는 것입니다.

魯 貞 烈 牧師
光 州 N . C . C 会 長
在日同胞の苦難の現場訪問者

光州N.C.Cの人権委員会で行る9月5日から10日まで在日同胞の苦難の現場を訪問した結果、教会の指導者たちと同行した私たち一行は過去の日本軍国主義が犯した蛮行を見回って、とても苦しくて堪まらなかったし、しゃくにさわる心を抑えつけられなかった。我々はキリストの愛でキリストの使役をなしおえる人々であり、又キリストの愛で民族と国家を超越してこの地の上にキリストの福音を伝えなければならぬと言う共同の運命をもっている。それで、もう今は過去を鑑として歴史と感情を超越して我々と同じ立場で歴史の悲劇をいっしょに理解し、我々の苦痛を分けてやる韓日の両国教会の指導者たちと全教会がイエス・キリストの愛を中心として、もっと和合・親交・協力してこれから残こしている歴史的な難問題をいっしょに解して行けるといくらいいかと思ひながら今度の韓日国際シンポジウムを迎えて我々の立場を少し言いながら事例を報告致します。

・ 在日同胞の苦難の現場訪問の紀行

① 名古屋の家のない(ホームレス)労働者、無職者たちの広場を訪問。

- ・ 名古屋で一番繁華な栄町の辻で約130名のホームレス労働者たちに毎週2回ずつ名古屋市の開新教会とカトリックで交代に火曜

日と木曜日の午後8時にこの場所で無料給食するプログラムをおおよそ20年間行って来たと言う事例。

- ・ 問題は彼等を基督教では人権の次元でどう解決し、対処して行けばよいのか漠然な立場である。(名古屋駅まで合せると約300名)
- ・ 彼等の部類は若い時から放蕩に生活して今の老年になっては家族たに外面されて家に入られない人である。
- ・ 解決の方法は一時的な基督教系統の給食でなく、富強な日本政府がもっと具体的な長期計画でも立てて彼等の問題を解決するのが急務であると思われる。

②. 岐阜県にある久々利地下軍事工場を訪問。

- ・ この工場は日帝が大東亜戦争の末期に三菱飛行機工場の部品の製作のために作った地下洞穴を掘ってその地下を蜘蛛の巣のように交わされた大きな軍需工場である。その大きさは高さが2m、幅が4m、長さが8Kmであり、その内部には変電所、倉庫、診療所、食堂など工場としてのすべての施設を揃えている。
- ・ 又、その洞穴は岩山を貫通し二つの山を連結したので、そこに動員された人々は一万余名であり、全部が朝鮮から無理遣りに又は詐欺によって引っ張られた青少年とか徴用されて連行された人々である。

③ カナヤマ水力発電所(訪問の時、プリントには丸山となっていたのである。)

- ・ この所もやはり日本軍国主義が朝鮮から無理遣りに連行して徴用された人々と青少年たちによって強行されたのである。
- ・ 死亡者の碑(慰霊碑)は今まで疎かな状態で、犠牲者の名前が全部日本式の名前で記録されているが、全部朝鮮人である(日本人式の

日本の名前ではなく、たとえばハヤシ(林)、カナモト(金本)などである。)

④ 長野県にあるマツシロ大本営

- マツシロ訪問の前日、当時の現場の証人として「松代大本営の保存推進会」の会長である青木孝寿(アオキタカシュ)先生から約3時間ぐらいにかかって歴史の過程に対して説明をきいたから予備知識をもって次の日、現場に臨んだのである。
- 1944年(昭和19年)11月に始まって45年8月15日まで9ヶ月の間にその大きな地下“トーチカ”と言うほどの日本大本営を無理遣りに建設したのは大変な無理遣りと犠牲があったというのを予測できるようにしてくれる。(冬の凍死、餓死、栄養失調、殴打死、ダイナマイト爆発死など)
- この洞穴は総延長10.1Km、幅4m、高さ2.2mで、この山は堅い花崗岩で、工事の期間が急で、(日本の敗亡の直前だったので)短縮工事、徹夜工事、催促した工事でダイナマイトの続いた爆破があったそうである。
- この洞穴の目的は大きな地下要塞で、まず象山には日本のN・H・K放送局と政府機関、そしてマイジュール山には天皇と皇后、又宮内庁と日本大本営が入るようになっており、ミナカミ山には食糧倉庫と天皇の権威を象徴する神器を預かる神社を地下に建設し、天皇の居住する所からは60mをもっと深く掘って空襲の時天皇の避難所用で作ったのである。(今は日本地震測定研究所である。)

- 又、ここに動員された朝鮮の徴用者、青少年たちの連行の過程は日本の北の方の東海と近い富山で長野の現場まで汽車で輸送したのに、日本国民の目を意識して夜に貨物車で荷物のように積んで運んだそうである。

⑤ 京都のミミ塚(ハナ塚)訪問

- 過去の壬辰倭乱の時(日本の教科書には朝鮮討伐と書かれている。)豊臣秀吉が朝鮮の男女の耳又は鼻を(いくつか忘れてしまう。おそろく2万個でないか?)切って塩に漬けて自分の勝利の証票として誇示したそうである。
- その側には豊臣秀吉が乗った馬を仕えておいた神社がある。(まるで東京のメイジングウがメイジ天皇の遺物を仕えておいたのと同じようである。) -これも過去の同胞の苦難の現場である。-

⑥ 広島訪問

- 日本の訪問中、飛ばされない所で、我々の一行は京都の観光コースを放棄して計画にはなかったが広島を訪問したのである。

II. 我々の見解

- 詳しくは記録できなかったが大東亜戦争の悲劇が残した現実的な未解決の問題。
 - 挺身隊、慰安婦の問題。
 - 挺身隊難問題
- 1965年6月22日に調印された“韓日基本条約”を見ると過去の清算に対する言及は全々いない。但、第2条に“1910年

8月22日及びその以前に大韓帝国と日本帝国の間に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はもう無効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当時、大韓民国は朴正熙大統領、国務総理-金鍾泌の時調印されたのである。)と言う文句が挺身隊問題の解決に一番大きなじゃまになる。それで日本政府では賠償も、補償も、請求権でもない、但、「独立祝賀金」を出したのである。

結論的に日本教会の指導者だちに協力を願うのは現実的な人権問題(挺身隊、慰安婦問題)に対して日本政府(ムラヤマ政権)から解決しようとする努力は見えますが、1910年の両国間に締結された条約がじゃまになっておりますからこの条約を廃棄して、難しいけれど修正も改正もできませんのにこの事項に対して出来るだけご協力して下さいようお願い致します。

사례보고 5 (한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김 경 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 전쟁범죄 책임회피하는 '민간위로금' 안을 즉각 철회하라!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즉각 배상하라!
- 전후처리 해결없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한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는 벌써 140여회째 역사의 진실을 촉구하는 외로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4에서 20세의 꽃다운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노예로 짓밟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앓이를 하면서 외치는 전 일본군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절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본정부는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시혜적 차원의 '민간위로금'을 구상중이라고 하니 더욱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본정부가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이 문제를 할머니들에게 단순히 돈 몇푼 주고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일본정부가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국제법에 따른 배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위로금은 너희 일본거지에게나 주어라.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다. 우리 청춘을 보상해라. 너희 일본를 다 팔아 준대도 내 삶이 보상되겠느냐. 먼저 용서를 빌라. 그래야 용서해주고 좋은 이웃으로 살지..." 이는 94년 9월, 동경에서 민간위로금 반대집회시 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외침이다.

1. 정대협은 일본의 국제법적 배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를 준비중에 있다.

일본정부는 계속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게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정대협에서는 국제법하에서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고 법적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해 있는 국제중재재판소에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국제중재재판에 재소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국제중재재판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변호인단이 구성되어 할머니들과 정대협의 법적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미 9월 15일 일본에서 국제중재재판을 성공시키는 집회를 가진 바 있다. 국제중재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국 일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이에 동의하는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2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해 국제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에 관한 서명운동 전개

최근에 일본이 프랑스로부터 다량의 플루토늄을 반입하여 일주일 이내로 다수의 핵폭탄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진 바 있어 아시아 여러 피해국에게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경계심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경계는 일본이 과거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이 요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정대협에서는 일본이 전후문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가입에 반대하는 국제서명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펼칠 예정이며 12월초까지 전개될 예정이며 올해안에 모두 모아 유엔회원국 외무부에 보낼 것이다.

3.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유엔인권소위원회 및 국제인권단체들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대협 대표가 92년이래 여러차례 유엔인권위원회 관련 회의에 참석해 여러 국제 단체에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해 알려왔다. 이에 금년, 8월 유엔인권소위에서는 '전쟁중에 일어난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조사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과 '인권침해 범죄자 불처벌문제 특별보고관'에게도 그들의 보고서에 이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전쟁중에 일어난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에 대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린다 차메츠가 내년 4.5월경 남 북한을 동시에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쿠마라스와미가 내년 5월경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9월초,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일본 정부에게 모든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공개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해결할 행정적 기구설립, 긴급조치로서 피해자에게 40,000달러를 지급할 것 등의 7개항의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4. 중국에 계신 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초청 준비

지난 4월 정신대연구회와 윤정옥 대표는 중국 무한 지역의 생존해있는 9명의 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 할머니들은 16세-20세의 나이에 일본군 중화 사령부가 있던 우한지역에 끌려가 일본이 패전한후 버려진 분들이다. 우한지역에는 50년대까지 30명의 생존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병, 자살등으로 현재9명만이 생존해 있다. 그중 박필연할머니는 다리가 썩어들어가는데도 전혀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할머니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죽기전에 고국땅에 와보는 것이다. 현재 정대협에서는 이들 할머니들의 조국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북한국적을 소지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현재 정신대연구회에서는 이 할머니들의 증언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5. 해방50주년을 맞아 '여성과 전쟁 사료관' 건립 및 홍보 교육활동 전개

현재 정대협에서는 해방 50주년을 맞아 이 문제를 역사에 남기고 후세에 교육시킬 수 있는 '여성과 전쟁 사료관' 건립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서, 사진, 비디오 테잎, 피해자 관련 자료등을 수집중에 있다.

또한 1993년 출판된 증언집 I 이 곧 영문으로 나올 예정이다. 제5차 세계 여성 대회가 95년 8월 30일부터 북경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 대회중에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인권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지역 피해국 단체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관한 포럼 및 다양한 행사를 펼치 예정이다.

6.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활동

현재 한국정부에 등록되어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분은 170여명에 이른다. 그 중 정대협은 본회에 등록된 분들에게 병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같은 고통을 당한 할머니들이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정대협의 회원단체인 불교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오갈데 없는 할머니들을 위해 '나눔의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임시로 혜화동에 집을 마련하여 7인의 할머니가 도움을 받고 있다.

얼마전 요코하마의 한 교회에 정식으로 정신대 할머니를 공부하는 '발자치'라는 회가 교회내에 상설되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정대협을 방문해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였다.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의 범죄 사실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고 깊이 사죄하고 있다. 이 문제가 일본정부 자체가 움직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때마다 많은 한국인들과 한국교회의 무관심을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기도 한다. 교회가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죄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지난 50년간 할머니들은 한번도 우리정부나 국민, 신자들로부터 위로의 말도 듣지 못하고 가난속에서 살아왔다. 우리가 진상규명이나 사죄없이 주는 위로금을 반대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할머니들의 생계를 돕고 위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리본이 국제법을 지키고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국과 일본, 아니 세계 양심인과 신앙인들이 함께 연대하여 운동을 펴야 한다. 우리는정신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통하여 이와같은 비극의 역사가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삼고, 이 아시아와 세계민족 사이에 정의와 화평을 이루는 정의의 호소를 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가 함께 가까운 이웃으로 살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 戦争犯罪の責任を回避する“民間慰労金案”を即刻撤回せよ!
- 日本軍“慰安婦”被害者に即刻賠償せよ!
- 戦後処理解決のない日本のUN安保理常任理事国の加入を反対する!

毎週水曜日ごとに、日本大使館の前ではもう140余回目の歴史の真実を促す義のある声がつづいている。これは14歳から20歳までの若い年で強制的に引っ張られて日本軍の性慾の奴隷で踏みしだれてからの50余年が経った今までも胸がさける思いをしながら叫んでいる前日本軍“慰安婦”であったおばあさんたちの絶叫である。

しかし、今までも日本政府はまことの反省や謝罪もしていない。最近、日本政府が施惠的な次元の“民間慰労府”を造成しているとのことだが、一層憤らざるを得ない。これは日本政府が戦争犯罪に対する責任を回避しこの問題をおばあさんたちに単純にお金なんかで解決できようと考えているのである。この問題の真の解決は日本政府がこの犯罪事実を自ら認めて被害者に謝罪し、国際公法に沿って賠償を行うのである。“慰労金はお前ら日本こじきにあげろ、私たちは貧しいけど我が政府から出る補助金がある。私たちの青春を償え! お前らの日本を一つも残らず全部くれるなんて私の人生がもどってくるのか。先に許しを詰え。それでこそ許しをあげ、よい近所になるんじゃないか……”これは94年9月、東京で“民間慰金”の反対集会の時、前日本国“慰安婦”であったおばあさんの叫びである。

(挺身隊対策協議会?)

1. 挺・対・協は日本の国際公法的な賠償の義務を確認するために国際仲裁裁判所に提訴することを備えている。

ところが、日本政府は前とかわらず日本軍“慰安婦”被害者に個人的な賠償ができないとの立場を表わしている。これに対して、挺・対・協では国際公法下で日本軍の“慰安婦”犯罪に対する真実を明らかにし、法的賠償を受け取るための方法を模索してきた。最近オランダのヘイグに所在している国際仲裁裁判所から個人が国家を相手取って提訴することができるのを知りようになって、国際仲裁裁判所に提訴することを決議した。現在国際仲裁裁判を成功させる集会を開いたことがある。国際仲裁裁判所が成立するためには当事国日本の動議が前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日本政府がこれに動議するかと言う問題が鍵である。

2. 日本国“慰安婦”犯罪に対して国際法的な責任を取らない日本はUN安全保障理事会の常任理事国になる資格がないということに関する署名活動の展開。

最近、日本がフランスから多量のプルトニウムを搬入して、一週間以内で多数の核爆弾の製造が可能であると知られていて、アジアの多くの被害国に日本の再武装に対して警戒心を抱いている。このような警戒は日本が過去戦争犯罪を認めず、国際公法に沿う法的な責任を取っていないのでもっと増幅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日本が近ごろUN安保理の常任理事国の加入に努力しているそうである。挺・対・協では日本が戦後問題の処理をろくに行わない状態でUN安保理の常任理事国加入に反対する国際署名運

動を展開している。この署名運動を始めとしてアジアの地域を中心にして全世界を対象として12月初めまで展開する予定で、今年中に全部集めてUN会員国の外務部に送るつもりである。

3. 日本軍“慰安婦”犯罪に関連して日本政府にUN人権所委員会及び国際人権関係などに活潑な活動を展開している。

挺・対・協代表が92年以来数回UN人権委員会の関連会議に出席して多くの国際団体に日本軍“慰安婦”犯罪に対して知らせてきた。これに、今年8月UN人権所委では“戦争中に起きた女性に対する組織的な性暴力についての特別報告官”を任命して調査することを決議し、また“女性に対する暴力問題の特別報告官”と“人権侵害の犯罪者の不処罰問題の特別報告官”にも彼らの報告書にこの問題を含ませることを決議した。また“戦争中に起きた女性に対する組織的な性暴力についての特別報告官”に任命されたリントジャメツが来年の4・5月頃南北韓を同時に訪問して調査活動を展開する予定で、“女性に対する暴力問題の特別報告官”のクワラスワミが来年5月頃韓国を訪問する予定である。

また、9月初め、国際法律協会(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は日本政府にあらゆる日本軍“慰安婦”の関連資料を公開と被害者たちの要求を解決する行政的な機構の設立、緊急措置として被害者に40,000ドルを支給することなどの7項目の勧告を発表したことがある。しかし、現在日本政府はこのような勧告を一向受け入れていないのである。

4. 中国におられる前日本軍“慰安婦”であったおばあさん招請準備。
今年の4月、挺身隊研究会のユンソンオク代表は、中国の武漢地域で

生存している9人の前日本軍“慰安婦”であったおばあさんだちを訪ねて調査活動を行なった。このおばあさんだちは18~20歳の年で、日本軍の中華司令部があった武漢地域に引っ張られて、日本の敗戦後捨てられた方である。武漢地域には60年代まで30人の生存者があったと言うことだが、病気・自殺などで現在9人だけが生存している。その中でパクピルユンおばあさんは足がくさって来ても一向治療を受けるのができないことである。このおばあさんだちの同じ一生の願いは、生きている間、故国に帰ることである。現在、挺・対・協はこのおばあさんだちの祖国訪問を推進しているが、大部分のおばあさんだちは北朝鮮の国籍をもっているのもむずかしいことが多い。現在、挺身隊研究会ではこのおばあさんだちの証言集の出版を準備している。

5. 解放50周年をむかえて“女性と戦争の史料館”建立及び広報教育の活動の展開。

現在、挺・対・協では解放50周年をむかえてこの問題を歴史に残し、後世に教育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女性と戦争の史料館”建立を準備している。現在、日本軍“慰安婦”の関連文書・写真・ビデオテープ・被害者だちに関連されている資料などを収集している。

また、1993年出版された証言集がすぐ英文で出る予定である。第5回世界女性大会が95年8月30日から北京で開く予定で、この大会期間中アジアの平和と女性の人権問題として日本軍“慰安婦”問題がおもな議題で取り扱われるだろう。韓国を始としてアジア地域の被害国団体を中心にして、この問題に対するforum及び多様な行事を開く予定である。

6. おばあさんだちに対する支援活動。

現在、韓国の政府に登録して政府の補助金を受けている方は約170名に至る。この中で挺・対・協は本会に登録している方に、病気・経済的に苦しい問題が起こると支援している。また、同じ苦痛を受けたおばあさんだちがいっしょに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あつまりを定期的に備えている。

挺・対・協の会員団体である仏教人権委員会を中心にして、依存する所のないおばあさんだちのために、“分け合いの家”建立を推進している。

現在、仮りに“ヘハットン”に家をそなえて7人のおばあさんが援助を受けている。

この間、横浜にある教会で、正式に挺身隊おばあさんを研究する“足あと”と言うあつまりの会が教会内に常設され韓国を訪問したことがある。彼らは挺・対・協を訪問した時、涙を流しながら謝罪した。多くの日本人は日本の犯罪事実についてはずかしがっているし、深く謝罪している。この問題は原則的に日本政府自ら動くはずのことだが、多くの良心的な日本人がこの問題について関心をもっているのを見ると、かえって多くの韓国人と韓国教会の無関心が見られて、我が自身もはずかしく思われるのである。教会が疎外され苦痛を訴えている人々の友達になって罪なしに苦しむ人々に近づ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もう一度考えて見るのである。

去る50年間、おばあさんたちは一度も我が政府や国民、信者たちから慰めの話も聞くことなく貧乏な暮し中で生きて来たのである。私達が真相究明や謝罪なしにやる慰労金を反対するならば私達自らがおばあさんたちの生計を助け慰めることをするのがすじみちであると思う。又、日本が国際法を守

り，それ相当の法的な責任を負うように韓国と日本，世界の良心のある人と信仰人がいっしょに連帯し運動を開かねばならない。私達は挺身隊問題の正しい解決を通して，このような悲劇の歴史が再び繰り返えされてはいけないと言う教訓にして，このアジアと世界民族の間に正義と平和を築き進んでは正義を訴えながら韓国と日本そうして世界がいっしょに近い近所へと展開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사례보고 6(한국)

외국인 노동자, 우리의 이웃입니다!

김해성 목사
(산자교회, 성남교회협 인권위원장)

1. 중국교포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담사례

1) 중국교포 허순필(41세, 중국 요녕성)씨는 1993년 5월 12일 분당 건영아파트 2차 신축현장에서 일을 하던중 14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회사측은 처음 200만원부터 시작하여 최종 800만원을 제시하였다. 그 근거로는 분당의 다른 사업장의 경우 지금까지 사망사건에 대해서 보상액이 그 정도이기 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돈도 중국에 가면 꽤 큰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이 그 이전에는 적용이 되었지만 노동부장관 지침으로 보상을 금지하였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시간이 흘러 30일이 경과되자 회사측은 영안실의 유족에게 공급하던 모든 식사를 일제 중단시키고 관계직원은 철수를 해 버리자 안타깝게 여긴 주변의 사람들이 본 성남인권위원회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2) 필리핀인 에리엘 갈라(31세)도 위와 같은 시기에 경기도 광주군의 보은덱게 생산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오른손 팔목 중간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회사에서는 450여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서 더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 물론 산재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네팔인 기산(36세)은 1994년 2월에 경기도 양주군 회춘면 주물공장에서 작업도중에 옆 공장에 근무하는 술에 취한 한국인 직공으로 부터 엉덩이를 건

어 채웠다. 깜짝 놀라 떠듬떠듬 서툰 한국말로 항의를 하자 “어디에다 말 대답을 하느냐? 죽어볼래? 하며 밖에서 쇠파이프를 가져와 머리를 내려치는데 팔뚝으로 막아 팔뚝이 복잡골절이 되었다. 당시 가해자는 기산에게 총 3만원을 치료비로 주었고 기산씨는 자기돈으로 치료를 받고 기브스를 하였다. 치료 도중에 주물공장 사장은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고 다친 손을 아예 잘라 버리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한손으로 일을 하면서 무거운 주물제품을 운반하다가 다친 팔에 이상이 생겨 총 4차례나 기브스를 하게 되었다. 때린 가해자나 공장 사장은 법대로 하라며 기산을 내어 쫓았다.

4) 중국교포 독고용선(60세, 남 중국 흑룡강성)씨는 서초구 반포4동 효성가든빌라 현장에서 1992년 1월 20일부터 야방(주간인부, 야간경비 및 자재관리)으로 밤낮없이 일을 했으나 1994년 7월까지 월급은 3개월분만을 받았고 심지어 독고용선씨의 부인이 식당에서 번 돈까지 꾸어가 총 2500여만원을 채불시켰다. 사장은 교포라는 약점을 잡아 금액을 전혀 지불치 않았고 노모가 위독하여 귀국해야 하는 사정까지 이야기하며 채불임금의 청산을 요구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던 중에 사장은 부도를 내고 구속된 상황이다. 한숨을 쉬며 하는 말은 “중국에서 40년 일한 것 보다도 한국생활 3년동안에 더 많은 일을 했고 이렇게 힘든 일은 처음이다”라는 것이다.

5) 네팔인 고빈다(26세)는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더 좋은 조건의 공장으로 옮기고자 설명을 하니 사장은 “그것은 네 사정이고 네가 가면 공장 문을 닫아야하니 안된다”고 하였다. 실제 그 공장은 직원이 50여명이나 되는 꽤 큰 회사인데도 그 동안 온갖 일을 도맡아 열심히 일한 고빈다를 놓치지 않으려는 생각이었고 결국 설득이 되지 않자 공장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옥상 난간 위에 앉혀놓고 따귀를 때리며 폭행할 때 이를 피하던 고빈다는 3층 높이의 9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그후 전치 6개월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도중에 형사고발이 되었으나 사장은 벌금 100만원을 물었울 뿐 자기는 때린 사실이 없기에 억울하고 실제 옥상에서 ‘엎드려 뺨쳐’는 시킨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장은 “내가 그렇게 잘 대해 주었는데 고발까지 하다니 패씹해서 한푼도 줄수 없다”고 했고 주변의 도움으로 민사소송에서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는데도 실제 치료비나 보상비를 한푼도 내어놓고 있지 않고 있다.

6) 중국교포 선우관홍씨(30세)는 1993년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의정부의 염색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선우관홍씨가 한국에 나오게 된 동기는 동생 선우덕홍씨가 한국의 유명 참치회사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도중 화재가 발생하

여 사망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틈틈히 시간이 나는대로 밖에 나와 성남 인권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동생의 보상문제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기한이 되어 귀국하였다. 선우관홍씨는 연수생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 귀국한 정상적인 체류자였던 바 문제는 그의 작업조건이다. 하루에 12시간을 일주일씩 주야간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철야등의 수당도 없이 임금은 월 30만원이다. 더욱 큰 문제는 월급 30만원중에서 60%인 18만원을 중국 용역회사가 떼어간다. 결국 12시간씩 주야간 교대로 일한 노동의 댓가가 12만원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12시간 외의 잔업을 추가하거나 작업장을 탈출하고자 애를 쓰는 것이다.

7) 중국교포 류정기(63세)씨는 성남의 영세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일하던 중 오른손 손가락 4개가 절단되었다. 회사측은 접합수술을 통해 치료를 해주었는데 얼마후 손가락이 통통 부어 오르고 통증이 오며 냄새가 나서 회사에 찾아 갔더니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보상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사장은 “당신 때문에 1차 치료비도 많이 들었고 심사가 혼란하여 나도 손해가 막심하니 더 이상의 치료나 보상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처음 인권위원회를 찾아 왔을 때 손가락은 오이 만큼씩 부어 올라 있고 붕대를 풀자 썩는 냄새가 진동하였다.

먼저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을 시켜 절단 수술을 받아 4개월이 지난 지금 노동부에서는 5인 이하 사업장으로서 산재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산업재해 보상은 이루어 질수 없다고 한다. 사장은 가진 재산이 없으니 필요하다면 공장의 샷시세 보증금이나 노후된 사출기 전부(두대)를 가져 가라고하고 더이상 책임질 수 없다고 한다. 류정기 할아버지는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겠는데 보상비는 제치고서라도 병원비는 어떻게 물고 중국의 가족에게는 빈손으로 돌아가 무엇이랴 설명해야 하느냐며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하여 “한국에서는 콩팥을 팔 수 있다는 데 방법을 소개를 해 달라”는 요청이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그럼 이대로 돌아가야만 하느냐?”고 울음을 터트린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정과 현상

근래 수년 간 한국의 제조업 생산직의 인력난은 심각한 상태이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990년 3월 기준으로 전산업의 부족 인원은 19만명이며 부족률은 4.34%이다.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부족 인원은 15만명으로 전 산업 부족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소위 3D업종(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의 인력

난은 매우 심각하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가 넘으면서 일반적으로 3D업종 일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중소제조업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1월 현재 중소기업체의 부족 인력은 35만명에 이른다고 보고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들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동남아 등지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기술 집약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을 선택할 수 없는 기업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이런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저임금 노동력을 계속해서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영세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과 생산비용의 증가로 1993년에만도 1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파산하여 문을 닫았다.

이러한 이유들로서 정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공공연히 묵인하게 되었고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노동력의 부족 때문에 빚어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업주들은 외국 인력의 수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수입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인력난과 기업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정부는 과거에 비해 출입국 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하지 않은채 문을 대폭 개방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정책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출입국 관리법 12조에 따르면, 제조업체 등에 외국인 생산직 노동자가 체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기술을 가진 전문 직종에 한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들이 생산직 종의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만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3D 업종의 제조업 생산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신고를 받아 6개월씩 4차례 걸쳐 출국을 연기시켜 주었다. 이들에게 발급된 '출국권고 명령서'는 이들의 신분을 합법화시켜주는 역할과 아울러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정부는 이들에게 이 명령서를 발부하면서 출국명령일을 6개월 단위로 갱신해 주고 마지막 출국 명령일까지는 그동안 불법체류하고 있던 공장으로 주거를 제한시켰다. 또한 여권과 항공권도 공장의 사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만일 이 조치를 어기고 다른공장으로 임의로 이동을 하였을 경우 도망으로 간주하여 책임을 맡고 있는 기업주가 이민국에 신고를 하면 체포되거나 출국할 때 벌금을 두배로 책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법적으로 불법체류로써 출국명령을 받은 신분으로 노동법의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는 정책이 잇따르게 되었다.

이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신분적인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된 대신에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부당노동행위 등을 당했을 경우 호소할 길이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으며, 그 이면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과 존재를 한국사회에 공식화 하고, 그동안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해 온 고용주들에게 면죄부와 새로운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법적으로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들의 노동을 묵인하고, 출입국관리 정책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법적으로 허용되진 않지만 기업주들의 요구에 의해 불법체류 형태의 외국인 노동자를 묵인하고 양산시키는 이중적인 정책이었다.

지금은 그동안의 침묵과 묵인으로 불법외국 인력을 사용했으나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들에 의한 인권문제 시비와 불법체류신분의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 불안 요인의 상승 등에 의해 정책적인 변화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조업체의 인력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기업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외국인력 수입을 공식부문(해외산업연수생 제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일정정도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형태를계속 은존시켜며 공식적인 해외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한 외국인력의 수입과 활용을 병행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3. 외국인 노동자의 당면 문제들

1) 사회적 신분상의 문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갖게되는 모든 종류의 불이익과 문제는 인종적인 차별성과 함께 그들이 갖고 있는 불법신분에서 기인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임금,노동시간,심지어 이들의 불법신분을 미끼로 금전을 갈취하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이들이 당하는 불이익은 기업주나 브로커들에게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도 노골적인 형태로 가해지고 있다.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정부가 이들의 한국으로의 유입이 국내의 인력을 채우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으로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주가 장시간의 노동을 시키든지, 임금을 주지 않든지, 폭행을 해도 이에 대한 정부의 제재나 처벌은 없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들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들을 감금, 강제노동, 임금체불, 신분증 압류 등을 고의적으로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 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이나 기업주의 부당행위를 호소하면 그는 체포되어 1년에 100만원분의 벌금과 함께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라는 사회적 신분은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당하게 되는 모든 문제의 원천이 되고 있다.

2) 기본노동권리의 침해 - 노동법의 보호, 권리의 박탈

위의 사회적 불법신분의 문제에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한국정부는 노동관계법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임금체불을 겪고 있으며, 장시간의 노동, 유해 사업장에서의 노동강요, 폭행 등 기본적인 노동권리를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본법 제5조(차별금지규정)에 따르면, 국적과 인종과 신앙에 불문하고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6조와 유엔법 2조 2항은 '인간의 사회, 문화, 경제적 기본권리에 대한 차별금지 조약'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노동자의 상담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장시간 노동의 강요, 질병 등의 것들이며 산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보호나 문제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몇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임금체불의 경우 대다수의 기업주들은 한, 두달 정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도 없다는 식의 의식을 갖고 있으며, 설령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에 대한 부당성을 말하거나 문제시할 경우 신분적인 제약에 대한 위협-강제출국조치-또는 폭행까지 일삼고 있다. 더구나 관할 노동부에 보호조치를 요구할 경우, 노동부에서는 입건 등의 처벌을 금지하도록 노동부장관 지침을 내려 강제조치가 아닌 권고 또는 행정지도의 차원에서 사건을 무마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사업재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산재를 당했어도 불법체류, 불법취업이라는 피해의식 까닭에 노동부에 신고를 주저함이 거의 대다수이다. 또한 신고를 한다 해도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5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현

재 법적으로 적용받는 이들은 드물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산재보상 보험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은 사람은 94년 2월 7일 정부의 발표 이후 8월말까지 보상받은 128명과, 지난 92년 8월에 일시 보상받았던 37명등 총 165명에 불과하다.

4.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의 활동 상황

1)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 주변에는 중국교포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언어나 문화의 차이, 불법체류, 불법취업이라는 신분상의 제약점들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여러가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생활문제들에 대해 하소연 할 곳이 없는 이들이며, 이들이 겪는 문제와 고통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아파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하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유린하지 말고 떠도는 이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는 바로 우리들이 감싸 안아야 할 문제이며, 온 힘을 다하여 일해야 할 선교적 사명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성남 지역의 몇몇 교회와 인사들이 모여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열게 되었다. 처음에는 성남 2.3공단 앞에 위치한 노동 상담소 "희망의 전화"를 통하여 내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 오던 김해성 목사(성남 산자교회)가 개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을 해오던 중 이를 좀더 조직으로 협력하고 돕고자 1993년 9월경 주민교회와 지역의 인사들에게 함께 동참할 것을 제안하며 태동을 하게 되었다. 이후 약 6개월 동안의 논의와 준비기간을 통해 전문 일꾼을 양성하고 함께 일 할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작업 등 일련의 준비를 거쳐 1994년 4월 12일 개소식을 시발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단순히 동정적 차원에서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로 인식하며, 이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자각하고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도록 돕는 일 뿐 아니라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돕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민중해방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국제적인 연대를 통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일하도록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과 포부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2) 사업 내용

① 노동상담 :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사망,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고통 등의 문제에 법률 상담/교육, 사업장 방문/항의,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적법한 보상의 촉구 등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돕고 있다.

② 의료상담 :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간단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의사 소통의 장애와 불법체류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약국이나 1차 진료기관을 찾아가지 못해 중병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회사의 무관심과 냉대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치료기관을 알선하여 치료를 돕고 있다.

③ 생활상담 : 실직 또는 질병 등으로 오갈데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마음놓고 휴식하거나 동료들과 친교를 나눌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쉼터를 통하여 평상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말이면 1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교제를 나누고 있다.

④ 교육활동 :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들로 인해 적응을 못하거나 종종 곤란한 경우를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머무르는 기간 동안이라도 최소한의 의사 소통과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 및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초급/중급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의 성과에 맞추어 한국의 문화/역사 교육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도 마련중이다.

⑤ 문화활동 : 외국인 노동자들의 휴식과 여가활용을 위해 등산, 스포츠, 견학, 관광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여름 수련회, 한국인 가정에서의 명절 함께 보내기, 지역 단체들과의 운동경기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서로의 이질감을 벗어버리고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계기들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⑥ 학술/연대 활동 :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문제의

구조적인 해결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여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나 인권 단체들과 연대하여 세미나 개최,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하여 대 사회 홍보 및 여론화 작업을 해 나가고자 한다.

5. 맺는 말

그 동안 6개월동안에 200여건의 상담이 밀려들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하는 부당한 억압과 고통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상담사례의 주종을 이루는 것 들로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의료 사고 등으로 가장 기본적인 노동문제에서 그들의 권리를 얻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차차오는 이들의 지역적인 분포도 매우 다양하여서 처음 지역운동으로 시작하였으나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 그들의 형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는 자원 봉사자들이 적극 활동하여 여러 지역으로 다니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너무 멀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쉽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 지역마다 상담소가 열려 지역별로 사건을 나누어 해결하며,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들 위해 일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긴밀한 연대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단순히 동정적 차원에서 보살필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로 인식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각하고 돌아가서도 주체적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자국의 민중해방을 위해 일하는 국제적인 연대의 틀거리를 만들어 세계평화를 위해 일하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의 문제로 발생될 것이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적과 신앙을 불문하고 모든 인간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치 아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억압과 착취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세계가 평화의 한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外国人労働者，我々の隣です！”

金海性 牧師

(サンザ教会，城南基督教教会協議会 人権委員会 委員長)

1. 中国僑胞と外国人労働者たちの相談事例

1) 中国僑胞，フオスンビル(41歳，男，中国のヨニョン城)氏は

1993年5月12日，盆堂の建営アパートの2次新築現場で仕事をする途中，14階で墜落して死亡した。会社の方では最初は200万ウォンから始めて最終的には800万ウォンを提示した。その根拠としては盆堂の他の事業場の場合，今まで死亡事件に対する補償額がそのぐらいだったので衡平の原則に基づか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し，そのお金なら中国ではかなり値打のあるお金であるというのだった。一方，労働部では産業災害補償がその以前には適用されたが，労働部長官の指針によって補償を禁じたから適用できないという返事だった。時間が過ぎて30日がへると会社の方では霊安室の遺族に供給したすべての食事を一切中断させて，関係職員も撤収してしまった。それで切なく考えた隣の人々が本城南人権委員会に助力を請ったのである。

2) フィリピン人 エリエル・カーラク(31歳)氏も上記と同じ時期に京畿道光州郡の保温覆いの生産工場で仕事をする途中，右手の手首の中が切れる事故にあった。会社では450余万ウォンの治療費を負担してからはもうその以上の補償はできないと知らせてきた。勿論産災補償も成されなかった。

3) ネバル人，ギサン(35歳)氏は1994年京畿道ヤンジュ郡ホェチョ面の鋳物工場で作業する途中，他の工場で勤めているお酒に酔った韓国人職工によって尻が蹴られた。びっくりして吃りながら下手な韓国語で抗議すると“どうして口答えするのか？死んで見ろ？しながら外で鉄のパイプをもってきて頭を打ち下ろした。それで手首で防いたが手首が複雑骨折になった。当時，加害者はギサンに3万ウォンの治療費を払い，ギサンは自分のお金で治療を受けてギブスをした。治療の途中，鋳物工場の社長は続けて仕事をしろと強要しながらもし仕事をしないと食べるのもできないし，けがさせた手首も切ってしまうだろうと言った。仕方なく片手で仕事をしながら重い鋳物製品を運ぶ途中けがさせた手に異常が生じて総4回にかけてギブスをす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殴った加害者も工場の社最も“法によってしろ”と言いながらギサンを追い出してしまった。

4) 中国僑胞トッコウンソン(60歳，男，中国黒龍川省)氏は瑞草区盤浦洞ヒョソンガードンビーラの現場で1992年1月20日から夜防(昼は人夫，夜には警備及び資材管理)で一日中働いたが1994年7月まで月給は3ヶ月分しかもらわなかったし，甚だしくはトッコ氏の婦人が食堂で働いてもうけたお金まで借りて行って総2,500万ウォンのお金を未払させた。社長はトッコ氏が僑胞という弱点をねらいお金を全々払わなかったし，老母が危篤になって帰国しなければならぬ状態になって未払賃金の清算を要求したが今日，明日と延ばすばかりする途中，社長は不渡を出して拘束された状況である。ためいきをつきながら“中国で40年間働いたのより韓国生活3年の間に

もっと多く働いた。そしてこんなに骨のおれる仕事は始めである”と言った。

- 5) ネパール人ゴビンダ(26歳)氏は韓国にきて少し過ぎた後もっといい条件の工場へ移すようとしたが社長は“それはあなたの都合であり、あなたが行ってしまうと工場の門を閉じら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だめだ。”と言った。実際、その工場は職員が50名ぐらいのかなり大きな会社なのにその間あらゆる仕事を引き受けて一生懸命に働いたゴビンダを逃さないようとする考えでそうしたが、結局は説得できないと工場の屋上に連れて行ってその欄干でびんたを食わしながら暴行を加えた。それを避けようとしたゴビンダは3階の9mの高さから墜落してしまって全身がきずだらけになった。その後6ヶ月を入院して治療を受ける途中、社長は刑事告発されたが罰金100万ウォンを出したばかり、自分は殴ったこともないから無実だと言いながら実際は屋上で少し気合いを入れたことはあると主張している。

そして社長は“私がそんなに助けてやったのに告発さえしたのか。けしからないので少しのお金もやれない。”と言った。しかし隣の助けて民事訴訟をして800万ウォンを支払させてもらうようになったが社長は実際の治療費とか補償費は少しも出さないでいる。

- 6) 中国僑胞ソンウクァンフン(30歳)氏は1993年、研修生の資格で入国してウィジョンブの染色工場で働いている。ソンウ氏が韓国にくるようになった動機は弟であるソンウドクフン氏が韓国の有名なつむぶり会社の遠洋漁船に乗船して操業する途中、火災によって死亡した事件の処理のためだった。それで時間がある時たび外に出て城南人権委員会の

助けて弟の補償の問題を完全に解決して帰国した。ソンウ氏は研修生で正式の手続きによって入国した正常的な滞留者だったが、問題はかれの作業条件である。一日に12時間で一週間ずつ昼夜交代で働いたが徹夜などの手当ももらわないで賃金が1ヶ月に30万ウォンである。もっと大きな問題はその30万ウォンの月給の中で60%である18万ウォンは中国の用役会社でもって行く。だから結局12時間ずつ昼夜にかけて働いた労働の代価で12万ウォンをもらうのである。それでその賃金を補充するために12時間以外に残業をしたり作業場を脱出しようとしたりしている。

- 7) 中国僑胞リュジョンギ(63歳)氏は城南の零細プラスチック工場で働いた途中、右手の指4個が切られた。会社の方では接合手術をしてくれた。しかしその少し後、その指がむくんで、痛みと匂が出て会社に行った。会社の方では100万ウォンをくれながら外の病院に行って治療するか中国は治療費がやすいのにそこに行って治療せよ。と言った。それで“補償費はどうなるのか?”とききますと社長は“私もあなたのため1治治療費も多くかかり、いろいろで痛手を負いたのでそれ以上の治療とか補償はできない。”と言った。始めて人権委員会にきた時、もうその指はきゅうりぐらいずつむくんでいたし、繃帯を解くと腐る匂が出来。まず近い病院に行って治療をしてから入院して切断手術を受けた。4ヶ月が過ぎた今は労働部でその工場は5人以下の事業場で、産災適用対象ではないから補償はできないと言っている。社長は自分も財産がないのに必要だったら工場の月賃保証金とか古くなった機械でももっていけ。もう以上の責任はできないと言っている。リュ氏はもう中国へ帰国しよ

うとしているが補償費はなくてもいいが病院費はどうすればいいのか、中国へ空手で行って家族に何んと言ったらいいのかと言いながら毎日電話をして“韓国では腎臓が売れるときいたが、その方法をご紹介します下さい”と要請している。それでそんなことは法でも禁じており、そんな事実はよく分らないと言ったら“それならこのまま帰国しなければならぬのか。”といいながら泣いてしまうのである。

2. 外国人労働者の流入廻程とその現状。

近来、数年間、韓国の製造業の人力難は深刻な状態である。労働部で調査したのを見ると、1990年3月を基準として全産業の足りない人員は19万名であり、足りない率は4.34%である。そして製造業の足りない人員は15万名で、全産業の足りない人員の大部分を占めており、特にいわゆる3D業種(きたない。あぶない。むずかしい。)の人力難はとても深刻である。韓国の経済が成長しながら1人当国民所得が6000ドルを越えてから一般的に3D業種を避けようとする現状が現われ始めた。

[中小製造業の実態調査報告書]によると、1994年1月現在、中小製造業体の足りない人力は35万名に達していると報告された。それで韓国の企業らはこの状況を克服するため韓国より賃金が安い東南亜などに企業を移すとか技術集約的な形態に転ずるため努力している。しかしこんな方法を選択できない企業がもっと多いので、そんな企業ではしかたなく低賃金の労働力を続けて必要とするようになった。そんな状況で零細製造業体では深刻な人力難と生産費用の増加によって1993年にも1万個以上の中小企業が破産してしまった。こんな理由によって政府では法的には禁じているが、外国人労働者が製造業体で働くのを露に見逃すようになり、

不法滞留及び不法就業を労働力の不足によって生じたしかたない現状であると認めるようになった。こんな流れによって企業では外国人力の輸入を強力に要求するようになったし、公式的に低賃金の労働力を輸入するようになった。

以上のような人力難と企業の立場を考えると政府では過去のように出入国の政策を厳しくしないままその門を大幅に開放し、不法滞留者に対する取り締まりを政策的にしていないのである。出入国管理法12条によると、製造業体に外国人生産職労働者の滞留は法的に禁じておる。但、特別な技術をもった専門職種に限り、政府から許された場合だけは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したがって韓国の社会で合法的に外国人が生産職の労働者になれる道はないのである。しかし今約10万名ぐらゐの外国人労働者が3D業種の製造業生産ラインで働いているから、不法滞留者の自進申告を受け入れて6ヶ月ずつ4回にかけて出国を延してあげたのである。かれらに発給された“出国勧告命令書”はかれらの身分を合法化させてやる役割とともにかれらを効果的に統制するためのてだてだ。政府ではかれらに命令書を発付しながら出国命令日を6ヶ月単位で新しく出してやって、最終出国命令日までその間不法滞留しておいた工場内にその住居を制限させた。又、旅券と航空券も工場の社長に任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いとぐちをつけた。もしこの処置をまもらなく外の工場に自分なりに移した時には逃亡したのと同じようになる。それでその責任を負っている企業主が移民局に申告をすれば逮捕されるとか出国の時罰金を2倍で払うようにしている。そしてかれらは法的に不法滞

留で、出国命令を受けた身分なので労働法の保護対象になれないという政策の適用も受けている。この処置は外国人労働者に身分的な不安感からは解放されてやったが、賃金滞払、産業災害、暴行、不当労働行為などに会うと訴える道のない状況を作ってしまった。しかし外の面では外国人労働者の必要性和存在を韓国社会に公式化させ、その間不法で外国人労働者を雇用してきた雇用主に免罪符と新しい労働力を供する役割を果たした。これは韓国の政府が法的には認めていないが、現実的にはこれらの労働を見逃しており、出入国管理政策を通して意図的に量産しているわけである。したがって政府の政策は法的には許されないが、企業主の要求によって不法滞留形態の外国人労働者を見逃し、量産させる二重的な政策だったのである。その間は沈黙と見逃しで不法外国人力を使ったが、今は外国人労働者支援団体などによる人権問題に対する是非と不法滞留身分の外国人労働者の増加による社会不安要因の上昇などによって政策的変化をするようになった。そして製造業体の人力難に対する社会的な共感帯の形成と企業主の強力な要求によって外国人力の輸入を公式部門（海外産業研修生制度）に転ず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政府は一定な程度の不法滞留の外国人労働者の形態を続けて存続させながら公式的な海外産業研修生制度を通した外国人力の輸入と活用を並行しようとする方向に進んでいる。

3. 外国人労働者の当面問題。

1) 社会的・身分上の問題

韓国社会で外国人労働者が会うようになるすべての不利益と問題は人種的な差別性とともにかれらがもっている不法身分から起因される。

上でも言ったように賃金、労働時間、甚だしくは彼れらの不法身分を餌にしてお金を奪うまで実にいろいろである。彼らが当る不利益は企業主とかブローカーだけでなく、政府からも露骨的な形態で加えている。政府から加える一番一般的な問題は政府が彼等の韓国への流入が国内の人力を補充するための政府の政策の一つであったのを自ら認めながらも、勤労基準法で彼等を保護しないでいるという点である。企業主が長時間の労働をさせるとか、賃金をやらないとか、暴行をしてもこれに対する政府の制裁とか処罰は全々いなかったのである。したがって外国人労働者を雇用している企業主は少なくとも法的には彼等に監禁、強制労働、賃金滞払、身分証の差し押えなどを故意的にし、これに対して政府から少しも制裁されないのである。外国人労働者が自分の労働条件とか企業主の不当行為を訴えると、彼等は逮捕されて1年に100万ウォンぐらの罰金とともに強制に出国されるのである。したがって外国人労働者の不法滞留という社会的な身分は彼等が韓国社会で会うようになるすべての問題の原因になっている。

2) 基本労働権利の侵害—労働法の保護権利の剝奪。

以上社会的な不法身分に対して話したように現在、韓国政府は労働関係法を不法滞留の外国人労働者には適用しないでいる。それで外国人労働者は日常的に賃金滞払に会っており、長時間の労働、有害事業場での労働強要、暴行など基本的な労働権利に対して全然保護されていない。

勤労基準法第5条（差別禁止規定）によると、国籍と人種、信仰を問わずすべての人々に同じように適用することを明示している。又、憲法第6条とUN法第2条2項では「人間の社会、文化、経済的な基本権利

に対する差別禁止条約”を明示している。しかし実際の労働現場ではこのような基本的な権利さえ認められない状態であり、政府ではこのような現実を外面している。実際に外国人労働者の相談の中で一番多い比率を占めるのを調べて見ると賃金滞払、産業災害、暴行、長時間の労働強要、疾病などであり、産災以外のすべては不法滞留の外国人であるという理由だけで基本的な保護とか問題の解決ができないのである。

これに対してもう少し詳しく調べて見ると、

1. 賃金滞払の場合、大多数の企業主は1、2ヶ月ぐらいの賃金滞払に対してはかまわないという考えをもっており、もし外国人労働者がこれに対して不当であると言うとか問題にする場合、身分的な制約に対する脅かし—強制出国処置—又は暴行さえ行わっている。そして管轄の労働部に保護処置を要求した場合、労働部では立件などの処罰は禁ずるという労働部長官の指針で、強制処置でない勧告又は行政指導の次元で事件をいたわり撫でることが大部分である。

2. 産業災害の場合も例外ではない。産災に会っても不法滞留、不法就業という考えのため労働部に申告しない場合が大部分である。又、申告をしても5人以下の事業場は産災保険の適用対象ではないのに、大部分の外国人労働者は5人以下の零細の事業場で働いているから法的に適用される人々は大変少ないのがあたりまえである。このような状況で現在まで政府から“産災補償保険法”によって補償を受けた人は94年2月7日政府の発表以後、今年8月末まで補償を受けた128名と、先の92年8月に補償を受けた37名を合わせて総165名しかない。

4. “城南外国人労働者の家”の活動状況

80年代の後半になって、我々の辺りでは中国僑胞とか外国人労働者がよく見られるようになった。彼等は言語とか文化の差、不法滞留、不法就業という身分上の制約によって漠然たる不安感を感じて生活している。又、彼等はいろいろな事件と事故、そうして生活問題などに対して話す所もないし、彼等に会う問題と痛みはただ彼等だけの問題でなく、我々がいっしょに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である。韓国の勤労基準法第5条によると“国籍、信仰又は社会的な身分の理由で勤労条件に対して差別的に待遇できない”と明示されている。又、聖書で神様は我々に“あなたたちは孤児とやもめの人権を蹂躪するな。そして旅鳥を虐げるな”と命令していらっしゃる。このような神様のお話を考えて見ると外国人労働者の問題はすぐ我々が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であり、力を尽くして仕事しなければならない宣教的な使命である。

このような認識の中で城南地域のいくつかの教会と人士が集って“城南外国人労働者の家”を開くようになった。始めは城南2、3工団の前にある労働相談所の“希望の電話”を通して内国人労働者のため働いてきたキムヘスヨン牧師（城南サンザ教会）が個人的に外国人労働者のための相談をしてきたが、これをもっと組織的に協力し、助けようと1993年9月頃、主民教会と地域の人士がいっしょに同参することを提案しながら始まるようになった。その後、約6ヶ月の間にいろいろな論議と用意の期間を通して専門人力を養成し、いっしょに働く人々を集める作業などの用意を経て1994年4月12日開所式を始発点として本格的な活動をしてから今日に至っている。

我々は外国人労働者の問題を単に同情的な次元でしようとするのでは

なく、同じ時代を生きて行く仲間であると認識しており、彼等が自分たちの限界を自覚し、主体的に自分たちの権利を得られるように助けることと、彼等が本国へ帰っても貧乏な人、苦痛される人々のために生きるように助けてやり、協力するのが我々の役割であると考えている。そうしてもっとどこのつまりは民衆解放のために働く人々の国際的な連帯を通して世界の平和のため働くように願いながらこの仕事をしている。

2) 事業の内容

ア. 労働相談

外国人労働者に起こる賃金滞払、産業災害、暴行、死亡、不当労働行為による苦痛などの問題に対して法律相談／教育、事業場の訪問／抗議、関連政府機関に対する適法な補償の促求などによって問題の解決のため助けている。

イ. 医療相談

大部分の外国人労働者は簡単な疾病が生じても意思がよく通じないし、不法滞留者という身分的な制約で薬局とか1次診療機関を尋ねて行くこともできないので重病に発展するケースが多い。又、産業災害に会っても会社の無関心と冷遇によって適切な治療を受けられないケースが多い。このように産業災害とか疾病で苦しめられる外国人労働者たちに治療機関を計らんで、治療を助けている。

ロ. 生活相談

失職又は疾病などで何処にも止まる所のない外国人労働者たちと、不法滞留の身分のため思い切り休むことも、仲間たちとの交わりもできない外国人労働者たちに休み所を提供している。この休み所を通して平常時に多い外国人労働者たちが生活しており、週末には100余

名が集まり交わっている。

エ. 教育活動

言語と文化的な差によって適応できない人とか時々困る場合に会う外国人労働者たちに彼等が止まる間でも最少限の意思が通じるように、又、適応できるように助けるため韓国語の教育及び生活教育をしている。教育は外国人労働者が容易に集まれる毎週日曜日午後3時から5時まで初級／中級の過程で進行されている。そして韓国語の教育の成果に合わせて韓国の文化／歴史の教育も並行して進行させて行く計画も考えている。

オ. 文化活動

外国人労働者たちの休みとひまの活用のため登山、スポーツ、見学、観光などの活動を支援している。夏の修練会、韓国人の家庭で祭りの時いっしょに過ごすこと、地域の団体との運動競技などを定期的に行い、お互いの異質感を脱いてしまっ、一つになれるようにそんなきっかけになれるように定着させて進行している。

カ. 学術／連帯活動

外国人労働者たちが会った問題を把握し、その問題の救助的な解決とその代案を提示する学術活動を展開しようとしている。そしてこれを元にしてその外の外国人労働者たちのための団体とか人権団体と連帯してセミナーを開き、資料集の発刊などを通して対社会広報及び輿論化の作業をして行こうとする。

5. 終り語

その間、6ヶ月ぐらいに200余件の相談が押し寄せて、外国人労働者

たちは自分が会った不当な抑圧と苦しみに対して訴えている。相談事例の大部分を占めているのは賃金滞払，産業災害，暴行，医療，事故などで，一番基本的な労働の問題で彼等の権利が得られないので苦しんでいるのである。訪問する人々の地域的な分布もとてもさまざまで，始めに地域の運動で行われたが，今は全国各地から訪問してきて彼等の具合を訴えている現実になった。それで現在は志願奉仕者たちを活用していろいろの地域に行って問題の解決のため最善の努力を尽しているが，地域があまり広いのもっと積極的に働くのはちょっと無理である。このような問題をよりたやすく解決して行こうとすればもっと多い人々の関心と参与，そして地域ごとに相談所が開かれて地域別に事件を分けて解決し，既存の外国人労働者たちのため働いていた団体との緊密な連帯活動が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と思われる。

我々は外国人労働者の問題を単に同情する次元で助けるのではなく，同じ時代を生きて行く仲間であると認識して，彼等が自分たちの問題に対して自覚し，帰国しても主体的に苦しめられる彼等の民衆のため生きるように教育し，助けるのが我々の役割であり，義務であると考えている。そうしてもっととどのつまりには彼等が自国の民衆解放のため働く国際的な連帯の拠り所として世界の平和のため働けばという願いももっている。

これからこの外国人労働者の問題は続けてこの地で抑圧され，苦しめられる我々の隣の問題として発生されるのであり，我々は彼等に対して愛と奉仕の姿勢で働い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我々は“国籍と信仰を問わずすべての人間は同等な神様の子女”であるというのを元に

外国人労働者たちの人権を保護し，不当な抑圧と紋りから彼等を保護し全世界が平和で一つに成れるように努力するであろう。